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09
----------	-------

발의연월일 : 2018. 11. 26.
발의자 : 김현권 · 안호영 · 김철민
김병기 · 윤호중 · 윤준호
설훈 · 위성곤 · 이개호
민홍철 · 오제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내 산지특별보호지역과 보전산지에서는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인은 보전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임업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6·25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 조사 · 발굴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임업인에게도 농어업인과 같이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창출 기회 확대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의무 마련(안 제9조)
- 나.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용어 정리(안 제12조, 제20조 및 제21조)
- 다. 산지특별보호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허용(안 제20조 및 제21조)
- 라. 보전산지에서 임업인이 임산물 재배와 주택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제9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산지전용”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행위”를 “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기”를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다.

사.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산지전용”을 각각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인”을 “농림어업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을 “농림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③ · ④ (생 략)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u>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1. ~ 8. (생 략) 9. 제20조제1항에 따른 <u>산지전용 제한지역</u>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 ----- -----. 1. ~ 8. (현행과 같음) 9. ----- <u>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u>
제2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산지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u>산지전용제</u>	제2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산지전용 ·</u>

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 10. (생 략)

11.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어업인이 해당 시·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생 략)

나. 농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 · 라. (생 략)

12. ~ 15. (생 략)

<신 설>

<신 설>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

1. ~ 10. (현행과 같음)

11. -----

----농림어업인-----

가. (현행과 같음)

나. 농림어업인-----

다. · 라. (현행과 같음)

12. ~ 15. (현행과 같음)

16.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

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

② · ③ (생 략)	<p><u>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u> <u>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u> <u>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